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연구 개발 특 구 의 육 성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6.9.)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책임보험 금액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과태료 금액 지침」('19.2월)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제19조의5 신설)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 금액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 개정(제44조 관련 별표 9 개정)

'19년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을 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부처 협의 중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9. 24. ~ 11. 3.)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실증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①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기술의 실증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의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실증특례를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 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 ⑤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실증특례를 시행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 금액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 등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마. 라목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의5(실증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①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기술의 실증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의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 <u>③ 실증특례를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u>

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
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
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
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
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
당 1억 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
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
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는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⑤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실증특례를 시행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

획서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
상계획의 배상 금액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
는 수준이어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손해에 대한 책임보
험 등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 락 처	044-202-4743